논문투고일자 : 2003. 03. 02 213 게재확정일자 : 2004. 04. 09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대외무역법 개정 방향*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Foreign Trade Act Including Trade in Services in Korea

박문서(Moon-suh Park)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목 차

I . 서론

Ⅱ. 대외무역법의 서비스무역 규율권능

Ⅲ.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대외무역법의 방향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As national income of a country increases, people's needs for the services are also increasing. Recently, Korea has been confronted with deficit of service account in BOP, despite surplus of goods account. We can suppose that the reason why service deficit has been occurred continuously is mainly due to the system of Korean Foreign Trade Act which exclude the regulation of trade in services. That is, the Act could not regulate trade in services in Korea. So, Korea could not promote the export strategies for trade in services. This paper focuses on discovering the substitutional strategies for the revision of Foreign Trade Act in Korea.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Foreign Trade Act in Korea should be reestablished fundamentally and also should include the articles related to trade in services and trade in goods simultaneously.

Key Words: 서비스무역, 대외무역법, Trade in Services, Service Trade

-

^{**} 이 논문은「호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I. 서 론

경제사회 부문의 디지털화 현상이 끊임없이 진전되고 있고, 역으로 이의 진전이 인류 문명의 많은 부분을 변모시키고 있다. IT 산업의 발전 내지 디지털화 현상은 세계 무역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 래하여 이미 글로벌 무역상품의 상당부분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화의 진전은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서비스상품을 생산, 유통 및 소비할 수 있게 만든 주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정보통신서비스와 컨텐츠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상품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상품은 더 이상우리 주변에서 멀리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서비스상품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물적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절대 소비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로서는 국제무역을 등한시할 수 없는 실정이며, 재화상품I)의 무역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음은 관련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재화상품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인 바, 본격적으로 서비스무역에의 관심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의 체계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권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편이며, 2003년 개정안에서도 서비스무역을 불완전하게 규율하는 법안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즉, 실질적으로는 재화상품의 무역거래를 중심으로 한 법 규범으로 남아 있으며, 이로써 포괄적인 대외무역정책의 수립이 불가함은 물론 주무부서의 분산으로 인한 부처간 이기주의 심화 등으로 국제무역정책 과정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체계를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규범으로 재입법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무역법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조항별 방향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특히 무역측면에서 서비스수출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과거 우리나라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이은 서비스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시동을 걸 수 있는 계기로 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다만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후속연구과제로 남겨둘 것을 전제로 하여 문제에 접근하기로 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서비스무역 관련조항을 검토하여 대외무역법이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규범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정 내지 재입법의 방향을 모색하 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¹⁾ 재화상품(goods)은 서비스상품(services)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Ⅱ. 대외무역법의 서비스무역 규율권능

1. 서비스무역 규율권능의 검토배경

서비스무역과 관련한 대외무역법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법 적용과정 내지 법이해 차원에서 혼란을 초래하거나 서비스무역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첫째, 대외무역법이 제정 사용된 이후 20여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서비스무역의 확산이라는 무역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친 개정 작업으로 법 조항 사용이 매우 혼란스럽게 되었다.

둘째, '서비스'라는 용어를 '용역'이라는 번역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애매하거나 진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용역'을 단순히 '서비스'의 의미로 해석할 때 무역상품으로서의 상품성을 크게 배제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의의를 저하시키게 된다.

셋째, 무역의 대상인 물품의 범위를 혼란스럽고도 불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음으로써 서비스무역상품 의 발굴 및 수출증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서비스무역 관련 규범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체계화되지 못한 결과 서비스상품의 무역관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 대외무역법의 현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은 1986년 종전의 무역거래법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방식으로 재입법된 이후 21세기로 접어든 현재까지 수차에 걸친 개정작업으로 각 조항의 체계가 크게 훼손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법 제정 당시부터 서비스무역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차원을 넘어 재입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여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는 헌법 이념에 따라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대외무역법이 1986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고, 1987년 7월 1일 시행된 지 어언 20여년의 세월을 지나게 된다. 시행 당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은 전문 72조와 부칙 11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한다는 취지 아래 7차에 걸친 개정 작업을 거쳐 1996년 12월 30일 전문개정에 이르렀다. 전문개정 이후에도 다시 8차에 걸친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3)

이와 같이 빈번한 법 개정 작업으로 제정 당시 72개이던 본문 조항은 법 제정 10년 경과 이후인 1996년 전문 개정 당시 60개 조항으로 축소되었다가 2003년말 제8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8개 조항이

²⁾ 대외무역법의 목적, 제정 배경(동기), 특성, 체계 등 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는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3) 1996}년 전문개정을 포함하여 1986년 제정 이후 2003년말까지 총 16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이 있었다.

추가로 신설되고 18개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50개 조항으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이다.4) 물론 각 조문속의 항, 호, 목별 개폐 상황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편이고, 따라서 이제는 여타 관계 법령에 연계되어 있는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법 조문 자체를 손질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무역거래자 및 무역관계자들이 대외무역법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여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에는 지나치게 혼란스러울 것이며,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무역을 생존시키는 데에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 서비스무역 규율의 권능

국제무역과 관련되는 각종 법안에서 서비스무역 자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사실상 없으므로 어디에서나 서비스무역을 규율할 수 있는 기본 법안이 없다. 서비스무역을 규율할 권능을 가진 법안은 우리나라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재입법 과정을 통하여 서비스무역에 대한 포괄적인 조항들을 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상품에 대한 시각을 단순한 무형재(invisible & intangible goods)로만 인식하던 단계를 지나 재화무역의 경우와 동등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대외무역법에서 규율한다면 모든 무역상품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거듭날 수 있으므로 서비스무역을 규율할 권능이 부여될 수 있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새로이 마련되어야 할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법안은 서비스수출드라이브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무역에 관한 한 종합적인 법안으로서의 권능이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WTO 서비스협정에 일치되어야 하며, 특히 투명성(transparency)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상품의 수출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법 조항들이 완성되어야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접근해야 할 서비스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에 관련되어 있는 법안마다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조항들을 명시하는 일은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서비스상품은 디지털상품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므로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입법안의 방향 역시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련 법안과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4)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11호로 전문개정된 이후 신설 및 삭제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설된 조항: 제9조의2(전문무역상사), 제9조의3~5(전자무역), 제20조의2(구매확인서 발급 등), 제21조의2(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제24조의2(수입원료 사용 원산지판정기준), 제25조의2(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② 삭제된 조항 :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③ 삭제후 대체 신설 조항 : 제26조, 제27조, 제28조 등

서비스협상 분야(sectoral proposals) 주무부서 비고 회계서비스(accounting services) 재정경제부 광고 및 관련 서비스(advertising and related services) 재정경제부 건축서비스(architectural services) 건설교통부 영상음향 및 관련 서비스(audiovisual and related services) 문화관광부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s) 재정경제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정보통신부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construction and related 건설교통부 engineering services) 유통서비스(distribution services) 산업자원부 교육서비스(education services)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에너지서비스(energy services) : oil and gas services 환경부 환경서비스(environmental services) 택배서비스(express delivery services) 건설교통부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재정경제부 법무부 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물류 및 관련 서비스(logistics and related services) 건설교통부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법무부 우편 및 특송 서비스(postal and courier services) 정보통신부 전문직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재정경제부 전문직종별 스포츠서비스(sporting services)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s) 관광서비스(tourism services)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표 1〉 WTO 서비스협상 분야 및 정책 주무부서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동향」, 2002.03, p.48.

2. 서비스무역 관련 기본조항 검토

운송서비스(transport services) : air/maritime/auxiliary

1) 물품 관련 조항 검토

지금까지는 기존 유체동산에 국한하던 재화무역의 범위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함한 '물품 등'으로 명시하여 무역거래를 규율하고 있었으나,5) 2003년 12월 법시행령 개정에서 용역(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식서비스 중심의 서비스상품과 지적재산권 형태의 서비스상품 일부를 규율하고 있을 뿐,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본래 서비스상품은 그 다양성으로 인하여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서비스상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개념을 '재화상품'과 '서비스상품'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물품이 상류(商流)를 시작하여 상거래의 대상인 '상

⁵⁾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3.

품'(commodity)⁶⁾의 지위를 가질 때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상품무역(trade in goods)을 재화무역(trade in goods)으로 바꾸어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⁷⁾

서비스무역에 대한 법 적용, 수출입실적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용어사용의 혼란을 사전 제거할 필요성에서도 '물품'에 대한 재정의 및 사용의 통일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무역'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서의 무역상품을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정하고 이를 '물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다시 제2호조항에서 물품을 '유체동산'의 개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규정은 무역의 대상인 상품을 물품(유체동산), 용역(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디지털상품)이라는 삼분법적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무역의 대상을 열거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정의하기에는 적어도 서비스상품에 관한 한 불가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서비스)의 범위는 2002년 하반기 정부의 「지식기반서비스 수출 활성화 대책」에 근거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서비스무역의 대상인 서비스상품을 총체적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8) 당시 무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무역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서비스수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일부 서비스를 열거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포함하고,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수출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6) &#}x27;상품'의 의미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구분되는 물품이 상적(商的) 흐름을 시작할 때 '재화상품' 또는 '서비스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방식의 용어사용을 관행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⁷⁾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중 '재화무역'(trade in goods)은 유체동산에 해당하는 전통적 무역의 의미로 사용하며, 이를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의 대응개념으로 이해한다. 또한 무형재 및/또는 무형상품(invisible and/or intangible goods) 은 비물적상품(immaterial commodity)의 의미이며, 유체동산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이 거래되는 상품을 지청한다. 본래 무형상품은 ① 권리상품(저작권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어업권, 운항권 등), ⑤ 완전추상적 상품(주가지수, 선물지수 등), ⑥ 서비스상품의 영역으로 구분되나 이에 대한 기본이론적 접근은 연구범위의 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⁸⁾ 산업자원부, 「知識서비스 輸出 活性化 對策」, 2002.08, p.1.

〈표 2〉 대외무역법시행령의 서비스 범위

조항	조문 내용	비고
대외무역 법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2(용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가. 경영상담업나, 법무관련 서비스업다.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다.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다. 인지니어링 서비스업다. 인지니어링 서비스업다. 단자인다.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 안권·의 장권·상표권·저 작권·저 작인접권·프로그램 저 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2003.12.31 신설
대외무역 법시행령 제2조의3	제2조의3(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 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합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001.3.31 신설

2) 서비스무역 거래방식의 검토

서비스수출드라이브정책을 계획하기 전에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서비스무역전략이 마련되어야한다. 서비스무역의 영역 가운데 서비스수입 내지 시장개방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전략의 기본은 서비스수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를 스포츠경기에서처럼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관점에서 논할 수 있지만 WTO 서비스협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고, 또한한국경제가 수출을 기반으로 하여 현 궤도에 올라선 수출드라이브정책의 성공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출전략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첫 번째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수출의 거래방식에 대한 접근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정책의 기본골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서비스수출을 규율하고 수출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서비스수출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할지도 모를 실무적 문제까지 논의되어야 한다.

인간의 욕구가 다양하고 매우 이질적인 것처럼 서비스산업이 그러하고 서비스상품 역시 그러하다. 서비스상품이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하다는 이유로 이의 거래모델 역시 복잡다기하며, 따라서 서비스부 문에 관한 제반 정책적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즉, 다양한 산업부문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정부내 주무 부처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다양한 법령을 제정하여 규율해야 할 것이다. 이의 결과 주무 부처간 갈등이 증폭되거나 비효율적 정책집행이 되기 쉬울뿐더러 국제무역에서 경쟁력 저하 및 통상마찰을 초래할 소지가 된다.

WTO/GATS에서도 서비스무역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의 서비스 공급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무역의 개념정의에 따라 각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비스부문의 복잡다양성에서 비롯되는 까닭에서이다.

유형		WTO/GATS 제1조	내 용
Mode 1	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공급	한 국가에 위치하여 다른 국가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느 한 국가에 위치한 서비스공급자가 다른 국가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치하는 등 상업적인 주재 (commercial presence) 없이 다른 국가의 소비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Mode 2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 자에 대한 서비스공급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회원국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 소비자에 대한 공급)
Mode 3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 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 를 통한 서비스공급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어 느 회원국 서비스공급자가 다른 회원국 영토 내 에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
Mode 4	자연인 이동 (presence of natural persons)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 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 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 를 통한 서비스공급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회원국 서비스공급자에 의해 다른 회원국으로의 자연인 이동을 통한 공급)

〈표 3〉 WTO/GATS의 서비스무역 거래방식

학술적 측면에서는 <그림 1>의 4가지 거래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역시 서비스상품의 거래유형을 포괄하지는 못한다. 특히 '거래유형Ⅱ'와 '거래유형Ⅲ'은 투자의 개념(외국인투자 및해외투자)으로 문제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무역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이동'의 거래유형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즉후자는 서비스공급의 주체가 개인(자연인)이라는 점이 전자와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급자/생산요소 불이동 국경 이동 불 이 거래유형 I 거래유형Ⅲ 동 국경이동형 서비스무역 해외사업형 서비스무역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상업적 주재) cross-border supply commercial presence 국 경 비 국내사업형 서비스무역 인력이동형 서비스무역 (서비스의 해외소비) (자연인의 이동) presence of natural persons consumption abroad 거래유형Ⅱ 거래유형IV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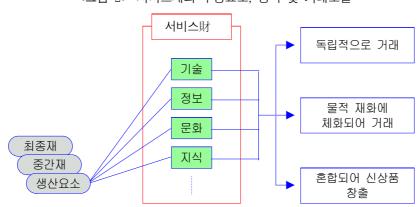
〈그림 1〉서비스무역 거래유형

주 : 거래유형IV는 WTO/GATS의 네 번째 공급유형과는 다소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다. (출처 : 연구자 작성)

그러나 이와 같은 거래방식의 분류는 WTO 서비스협상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 국내규범에서 수용되어야 할 것이지, 서비스수출전략 수립 내지 서비스수출드라이브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즉, 서비스수출드라이브정책을 계획하는 데에는 서비스상품의 국경이동형 공급형태를 원용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제는 산업현장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모델화할 것인가에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상품의 구성요소는 기술, 정보, 문화, 지식 등이며,⁹ 이들은 생산요소인 동시에 타 상품의 중간투입재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최종재로서 독립상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구성요소 자체가 독립적인 상품으로 거래되거나 물적 재화에 체화되어 거래될 수 있으며, 혼합되어 신상품으로 창출되어 수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서비스수출전략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수출거래방식의 모델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⁹⁾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재화생산의 투입요소(생산요소)를 노동(L)이나 자본(K)으로 접근하는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 2> 서비스재의 구성요소. 성격 및 거래모델

자료 : 박문서, 「서비스수출드라이브정책 실행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연구」, 산업자원부, 2001.12, p.29.

Ⅲ.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대외무역법의 방향

1. 대외무역법 관련조항의 문제점

서비스수출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법안들로는 대외무역법과 동 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있고, 무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과 그 하위 규정, 수출보험법,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무역위원회법(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하여 무역과 관련 있는 각종 특별법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외무역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이들 법안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현행 대외무역법상의 서비스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2(용역의 범위), 제2조의3(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규정 내용을 물품의 범주에 포함하는 조항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특히 물품의 범위에 서비스상품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출', '무역거래자' 등 용어정의 관련 조항들이 점점 더 서비스무역을 수용하지 못하고 문제의 핵심을 겉도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과가 된다.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가운데 서비스무역과 관련 있는 조항(개정되었거나 개정되어야 할 조항)들을 정리하여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대외무역법 및 동 시행령의 서비스무역 관련 조항

조항	조문 내용	비고
대외무역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3장 제5절 산업설비수출 등 -산업설비는 그 특성상 재화상품과 서비스상품이 결합되어 수출되는 것이 대부분임제22조 제1항 제2호 : 기술용역 등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39조(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 지적재산권침해물품 등의 수출입 -제40조(수출입 물품 등의 가격의 조작금지) -제41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제43조(조정명령) •제7장 보칙 -제52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대외무역법시 행령	•제2조(정의)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2조의2(용역의 범위), 제2조의3, 제3조 등 기타 대외무역법에서 대통 령령으로 위임한 조항	

1) 물품의 범위

어떤 물품이든 순수한 재화(goods) 또는 완전한 서비스(services)로 분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즉, 재화 및 서비스 사이에는 연속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역거래의 대상이자 객체인 물품에 대한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2조 제2호의 '물품'에 대한 범위는 동 법령 제정 당시 유형재, 즉 유체동산(movable, tangible & visible goods)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어 서비스상품의 수출 및 수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1990년대 후반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디지털상품의 국제무역이 활발해지자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00년말 법령개정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무역대상 물품의 범위에 포함 시킴으로써 '물품'의 범위를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표현되는 디지털상품의 범위가 소프트웨어, 컨텐츠, 디지털서비스 등 무형재(invisible & intangible goods)로 대표되고 있는 만큼 2003년 개정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조항과 더불어 동법 제2조 제1호의 '물품 등'10)의 표현은 서비스상품의 무역거래를 이미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¹⁰⁾ 대외무역법 제2조 제2호 '물품'의 개념에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2(용역의 범위) 및 제2조의3(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범위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이 명실상부하게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법안으로 변신하기 위하여 핵심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조항이 바로 물품에 관한 것이므로 유체동산의 개념에 서비스상품을 합산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이때 디지털상품(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의 관계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러한 범위를 탈피하여 서비스상품을 포괄하는 용어로 재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을 '재화'(goods) 및 '서비스'(services)로 구분하여 범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2) 개념을 고려하여 서비스상품을 현행 법령의 '물품' 개념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것은 서비스수출 증대를 위한 무역전략의 수립 및 실천을 저해하는 직접적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무역상품으로서의 '물품'을 재화 및 서비스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는 편이 정확하면서도 간단명료할 수 있다.

2) 무역(수출 및 수입)의 정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개념 정의는 2003년 12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정의) 조항에서 신설되었다. 즉, 서비스무역이라 함은 외화의 지급이나 영수 등을 조건으로 행해지는 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간 용역의 수출 또는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수출의 정의를 "매매 또는 사용을 원인으로 하여 외국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을 종전 재화무역의 수출 개념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용역거래로 규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서비스의 공급형태 4가지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항이 정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서비스상품을 포괄하는 '수출' 및 '수입'의 용어가 정의된다면 '무역'에 대한 용어도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쉽게 정의될 수 있다.

¹¹⁾ 이때 '물품'과 '재화'의 용어 중 어느 것을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립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많으나 국제수지 편람에서의 사용 관행에 따라 물품을 '재화' 및 '서비스'로 구분하고, 따라서 '재화'가 물품의 일부로 사용 하도록 관행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¹²⁾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물품'(재화 및 서비스)이 발생시키는 재산권 그 자체가 독립적인 서비스상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 서비스무역의 개념정의 관련 조항

조항	조문 내용	비고
대외무역 법 제2조 제1호	1. "貿易"이라 함은 物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 체물(이하 "物品등"이라 한다)의 수출입을 말한다.	2003.9.29 改正
대외무역 법시행령 제2조 제3호	3.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동법 제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 대한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제공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다.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대외무역 법시행령 제2조 제4호	 4.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제공으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다.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2003.12 改 2003.12 新

3) 무역거래자 및 거래방법

WTO 서비스협정에 따르면 서비스의 국경공급 및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나 자연인에 의한 서비스 공급 모두 가능하므로 무역거래자에 대한 범위 역시 재조정되어야 한다. 현행 규정이 법인 및 자연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조항으로도 무방한 편이지만 서비스수출 중소기업의 범위가 자연인(개인사업자)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조정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물품의 범위에 서비스상품을 포함한 무역거래방식은 재화무역의 거래방식과는 다른 면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아래에 열거한 거래방식을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상품이 일반적인 제조 상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재화무역의 거래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지만, 디지털상품일 경우는 온라인 거래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무역에 관련된 조항들에 대하여 손질이 가해져야할 것이다.

- 수출 및 수입의 정의에 의한 서비스상품의 거래방식
- 디지털상품의 일반적 거래방식
-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방식
- WTO/GATS 규정의 서비스무역 거래방식

4)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및 수출입실적의 인정

대외무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의 규정은 서비스무역의 경우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이들 내용들은 모두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들로서 재화무역 및 서비스무역에 가감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무역의 인프라 구축 및 무역지원에 필요한 조치들을 규율하고 있다.13)

한편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외화획득 관련 조항, 수출 및 수입실적의 인정에 관한 조항, 수출입 확인에 관한 조항 등은 모두 서비스상품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항 수정이요구된다. 이러한 내용은 2003년 12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으나 일관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표 6〉서비스무역의 수출입실적 관련 조항

조항	조문 내용	비고
대외무역법시 행령 제2조 제8호	8. "외화획득용 원료"라 함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 및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2003.12 改
대외무역법시 행령 제2조 제11호	11. "수출실적"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 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대외무역법시 행령 제2조 제12호	12. "수입실적"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대외무역법시 행령 제31조의2	제31조의2(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 또는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 관련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확인을 할 수 있다.	2003.12 改

¹³⁾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수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서비스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정 1998.12.10, 개정 2002.12.05 대통령령 제17791호)

2. 대외무역법 개정방향

1) 대외무역법의 포괄적 정비

서비스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내 법적 장치들이 정비되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법적 장치들의 기본적 성격이 과거처럼 규제 내지 제한조치 중심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4)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기본방향은 서비스수출을 총괄하는 기본법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과 현행 대외무역법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현행의 대외무역 관련 법 체계로는 서비스수출을 지원하거나 (WTO규범에 의해 지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총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 이제 서비스 무역상품을 일반 무역상품과 동등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법 체계 재정비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1) 서비스무역 기본법을 별도 입법하는 경우

우선 서비스무역을 총괄하는 기본법을 별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거는, 일단 여기저기에 산 재되어 있고 향후 더욱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산업 및 무역 관련 규정을 통합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할 수 있다.

이미 서비스수출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IT 수출은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문화관련 서비스상품은 문화관광부에서, 과학기술관련 서비스상품은 과학기술부에서, 통상협상의 상당부분은 외교통상부에서, 서비스무역 대금결제(수취 및 지불) 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에서 관장하는 등 주무 부서 및 법 체계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비효율적 으로 수출전략을 추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이를 통합 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WTO/GATS 규범에 일치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법안으로 입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현존 대외무역법이나 무역관련 특별법과의 관계 설정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주무 부서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외무역법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종합무역법으로 재입법)

대외무역법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에 잔존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한정된 재화무역을 규율하는 법안으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까지 대외무역

¹⁴⁾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의 논점들에서 재화무역과 서비스무역의 특성을 구분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흑백논 리처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없다. 이는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무역 분석이 본질적으로 애매한 영역(gray area)이 많기 때문이며, 따라서 서비스부문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의견이나 주장이 재화(goods) 부문의 경우보다 다분 히 많을 수 있음을 전제해둔다.

법은 우리나라 무역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왔지만 재화무역에만 한정된 일반 규정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을 아무리 시의적절하게 손질을 가한다 할지라도 급변하는 무역환경을 적절히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법의 기본골격이 서비스 무역상품이 배제된 상태에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연유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조항별 수정을 가한다 할지라도 21C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특히 무역상품의 중심이 IT기술 관련 상품 또는 디지털 상품으로 급격히 이행되고 있고, NT, BT, ET 등 첨단산업 분야로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를 반영한다면 대외무역법의 골격역시 이러한 흐름을 능동적으로 수용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서비스상품의 확대를 암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외무역과 관련된 법률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있다.

말하자면 현행 대외무역법은 서비스무역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권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현행 대외무역법을 폐지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종합무역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이에 대외무역법 정비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986년 제정 이후 수차에 걸친 개정의 여파로 삭제 또는 변경된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법 조항 이해과정에서 혼란 초래 → 법 이용자들이 과도할 정도의 법률지식을 가져야 이해될 수 있는 법안이어서는 아니 됨.
- ② 디지털 또는 사이버무역 시대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대외무역법 필요
- ③ 서비스무역의 범주를 포괄하는 종합적 법률이면서도 대외무역에 관한 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 (General Law of Trade in Korea) 내지 종합무역법으로서의 지위 재정립 필요
- ④ WTO 협정에 일치하는 한편 21세기 무역질서를 선도하는 대외무역법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으며, 2007년 법률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음(현 대외무역법 제정 이후 20년이 경과하여 법안 손질의 시차가 발생하였음).
- ⑤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각 주 무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서비스상품의 무역거래를 총괄적으로 관장할 기본법안 필요
- ⑥ 서비스무역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비 필요 : WTO/GATS 규범 내에서 서비스수출기 업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수립할 준거법안 필요

현대의 사회현상들이 복잡·다양해질수록 산업 및 재화의 유형도 매우 다양해진다.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고 IT신기술이 출현하는 한편 사람들은 새로운 패턴의 욕구충족을 위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상품들을 추구한다. 이처럼 상거래 대상인 물품이 문화상품, 정보상품, 지식상품 등 다양한 서비스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 상품의 국제무역거래를 관리할 법안들을 일일이 입법 한다면 대외거래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즉, 모든 법률에 대외무역 관련 규정을 명시할 수는 없다 는 뜻이다.

(3) 서비스(산업 및)수출지원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경우

신규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진통을 고려한다면 서비스수출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 성격의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986년 대외무역법 제정 당시 기존의 무역거래법을 산업설비수출촉진법, 수출조합법, 수출검사법 등과 통폐합하여 대외무역법으로 재정비하였던 것처럼 WTO 서비스협상의 진행 과정을 보아 가면서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규율할 수 있는 법안으로 입법할 수 있다.

2) 관계 법령의 개정방향

서비스재는 인간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재에 대한 욕구(needs)는 더욱 높아지게 되어 있다. 최근 경제사회 각 부문의 디지털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비스 재의 상당 부분은 디지털상품으로 지칭되어 생산, 유통 및 소비되고 있다. 이들 디지털상품의 국내거 대는 곧 무역거래로 연결될 것이므로 관련 법률적 근거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로 지칭될 정도로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문화 부문이 새로운 산업을 형성·출현하면서 다양한 문화상품을 생산, 유통 및 소비하고 있다. 다른 예로써 관광분야는 이미 대표적 서비스무역 분야로 정착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스포츠와 건강, 그리고 레저를 이유로 한 국가간 관광무역 거래는 그 중요성이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태여 논하지 않더라도 모든 나라들이 서비스무역의 중요한 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무역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법률적 기반이나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장치들이 정비되지 않아 국가간 무역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 다소 소홀해 보인다.

따라서 지식·정보재의 국가간 거래를 IT 무역으로 인식하여 제조장비 수출로 묻어버리거나, 국가 간 기술무역을 단순히 로열티 지불문제 또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로 돌려 단순한 외화 수수거래로 인식하거나, 문화상품의 국가간 거래 또는 관광객의 출입국 등을 서비스무역 문제로 인식하지 않음으 로써 발생하는 무형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식·정보재의 국가간 거래, 기술무역, 관광객의 출입국, 문화상품의 국가간 거래 등은 모두 서비스무역에 관한 문제이다. 이들 거래를 원활하게 하여 국제무역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조기에 마련되어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정들을 정비하는 데에는 매우 심도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로 보일 수 있

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정비작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첫째, 정보·지식서비스재 등 IT 분야의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즉 디지털상품의 국가간 무역거래를 규율하는 포괄적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 대외무역법 규정의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에 관한 조항을 체계화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관광무역을 포함한 문화상품의 무역거래를 포괄하는 규정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조항이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용역'거래에 따른 외국환의 수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정의) 조항의 제3호 나목과 제4호 나목 규정을 정비하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기술무역, 지적재산권의 국가간 거래 등 과학기술 및 재산권 분야의 서비스무역을 지원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무역 정책의 입안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주무부서, 총괄적 지원 인프라, 행정지원기관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적 조항은 이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상당 수준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법률15) 및 동법 시행령을 서비스무역 촉진을 위한 근거법령으로 원용할 수 있다. 이 법은 무역전시장, 전자무역 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촉진하는 시설·여건·정보·인력 등 무역거래기반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적인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6) 무역거래기반을 구축·정비·보강함으로써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은 재화무역의 경우는 물론 서비스무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3.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1) 인식의 전환을 전제

부산항에서 환적되는 컨테이너 1개가 약 200달러의 외화수입을 가져온다는 이야기, 관광객 1명 유치하는 것이 TV 10대 수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쥬라기공원 영화 1편이 벌어들인 돈이 자동차 150만대 수출하여 벌어들인 돈과 같다는 이야기 등은 한 때 유행어처럼 들리던 것이었다. 나름 대로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리라 판단되어 인식의 확산이 기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무역에 대한 인식은 정작 기대만큼 성숙되어가지 못한 편이었다. 자동차 1 대 수출한 것은 재화무역으로 자동차 1대가 수출된 것이며, 자동차산업과 같은 제조업의 파급효과는 서

^{15) 2000.01.28} 법률 제6227호 제정, 2003.05.29 개정

¹⁶⁾ 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참조

비스업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을 비하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지금까지 한 대의 자동차가 수출되는 과정에는 그 자동차 속에 체화되어 있는 서비스상품의 가치는 완전히 무시되어 왔다. 즉, 자동차 생산에 고도의 첨단기술을 투입하는 일이나,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한 설계, 외적인 디자인에 투입되는 비용은 모두 서비스재가 체화되는 과정이며, 이들 서비스상품이 자동차라는 물적 재화와 더불어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성숙되어 있지 못한 것의 직접적인 반증일 수 있다.

서비스무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주변에는 서비스무역활동이 크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외관광이나 스포츠 교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해외출장, 유학 교류, 국내외 방문인사들의 강연, 영화·공연 등 문화 교류활동, 디지털상품의 온라인 거래 등은모두 서비스무역 활동이다.

다만, 이러한 활동들이 서비스무역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단순한 "활동"으로 간주되어 관심 밖의 일로 고착화되어 왔다. 본래 서비스무역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초기단계부터 하나의 "활동"(activities)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지식, 정보, 문화, 기술(R&D) 등 서비스 생산요소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출상품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즉, 서비스재의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고비용 경제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무역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는 일은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 이다.

그러나 이제는 서비스상품, 서비스산업, 서비스무역의 실체를 총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 선진 주요국들의 공급시장이 더욱 확대되면서 각국은 무한경쟁 시대의 생존전략 모색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재화무역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 수립의 차원에서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을 크게 제고시키고 있다.

2) 서비스수출드라이브 정책의 과제

우리나라는 이제 서비스무역을 제2의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인식하고 성공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해외 서비스산업 및 시장 등 서비스수출 환경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며,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서비스수 출기반을 공고히 만들어나가야 한다. 또한 서비스수출상품의 거래유형 발굴 및 서비스상품 경쟁력 제고의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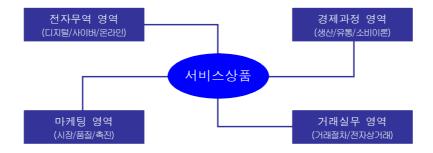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특별히 많은 이유는 오랜 기간 재화 무역 중심으로 유지되어온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방향과 포커스 및 기조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 이다. 몇 가지만 열거해 보기로 한다. 첫째, 사람중심의 시대에 맞는 무역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운송기술 및 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면서 인력이동이 매우 용이해졌다. 이는 서비스재의 생산 및 소비과정이 기계장비 등과 같은 시설재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서 서비스재의 이동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가간에 어떠한 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사전서비스(before service) 활동도 필요하고, 사후서비스(after service) 활동도 필요하다. 이는 곧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을 위한 것으로써, 그 답은 글로벌 서비스에 의한 서비스무역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등식을하나 만들 수 있다.

G/S(Global Service) = C/S by (A/S & B/S)

둘째, 재화무역과의 보완적 관계에서 서비스무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물론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일이 없다는 전제하에서이다. 제조업 또는 재화무역을 무시한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무역 정책으로 일관하는 일은 산업 균형의 유지 및 무역환경변화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

셋째, WTO 서비스협정(GATS)의 기본틀과 협상내용의 범주에서 서비스무역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서비스무역은 UR → WTO → DDA(도하개발어젠다)로 이어지는 서비스협상과 GATS 규범 속에서움직여진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생활에 깊숙히 스며들어 이미 많은 부분을 간섭하고 있다. 서비스무역이 향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WTO 활동은 서비스무역을 주도해나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TO DDA 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서비스무역 정책이 수립 및 실행되어야 한다.

넷째, 서비스무역과 연계되어 있는 경제활동의 영역은 매우 폭넓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을 대변해 주기도 하지만, 접근방법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도 된다. 다음 <그 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상품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무역의 관심영역은 매우 다양하며, 실제에 서는 이보다도 폭이 더 넓다는 사실을 사전에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림 3〉서비스상품 중심의 서비스무역 관심 영역

다섯째, 서비스수출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재화무역의 한계에 따른 위기감

과 이로 인한 상대적인 반발감을 해소하는 지름길은 서비스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양질의 노동력 확보, 정보·문화기술 등의 요소에 기반한 지식강국 건설 등 서비스수출 인프라를 튼튼히 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 나가야 한다. 재화무역에 부수되는 디자인 및 브랜드 가치는 서비스수출을 위한 인프라의 일종으로 보고 육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서비스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은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제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로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분석할 수는 없지만17) 한국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실체를 인정하고 제조업과 차별이 없는 산업정책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세계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본다면 산업연구원이 주장하는 "서비스업·제조업을 포괄하는 통합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18)이나LG경제연구원이 주장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병행 발전"이라는 문제인식19)은 긍정적인 접근으로판단할 수 있다.

2003년부터 내수가 지나치게 침체되어 있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무역흑자 규모가 돋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수출에 대한 관심이 위축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존자원이 부족하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무역없는 경제가 존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것도 중국경제가 급부상하면서 국내제조업의 해외탈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조업 수출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서비스무역이다.

현실적으로는 IT산업의 발전에 근거한 디지털상품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적 조항의 지원 및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미흡한 편이다. 이로써 전자무역 및 디지털상품의 관련 조항이 2001년 개정과정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이 국제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의 권능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

즉, IT 분야의 수출과 관련하여서 산업자원부(무역기본), 정보통신부(IT H/W상품) 및 문화관광부(IT 컨텐츠 중심) 등의 부서들이 앞다투어 수출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개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심지어 부처간 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부서간 협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 갈등이 없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서비스 부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상

¹⁷⁾ 서비스산업 현황에 대한 최신의 상세 내용은 산업자원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 비즈니스 서비스 및 서비스 수출 시책을 중심으로", 2001.09 자료를 참조.

¹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 제62호(2001-41), 2001, p.6.

¹⁹⁾ 이우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병행 발전 : 일본의 실패사례에서 배운다",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1.12.19, p.12.

품 수출의 핵심은 서비스무역에 관련되어 있다. 각종 디지털상품의 주류는 곧 서비스상품이며, 무역거 래 역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이므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그 동안의 논의를 대외무역 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책부서간 협력하는 자세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사전에 타파하고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대외무역법의 재입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외무역 관련 법규범을 체계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실질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특히 무역정책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수있는 각종 비효율적 요인들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착수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재화무역과 서비스무역을 동시에 포괄하는 대외무역법을 재입법 추진하는 한편, 강력한 서비스수출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서비스수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이는 물론 관련 법안에 명시될 일이지만 서비스수출상품이 매우 이질적이고도 다양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복잡한 무역거래 절차를 요구하게 되고 이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완비한 정책부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기존 부서에서 서비스수출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신 개념의 무역마인드형성이 곤란하고 또한 업무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참고문헌

김재윤, '인터넷 : 경제이상이 실현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00.01.
이범일 외 4인,「소프트경쟁력 : 21세기 생존을 위한 한국기업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10.
이우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병행 발전 : 일본의 실패사례에서 배운다",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
원, 2001.12.19.
윤기호, "정보재의 특징, 판매방식 및 정책이슈", 「정보통신정책」, 제228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동향」, 2002.03.
, 「DDA 서비스협상의 분야별 대책과 전망」, 2002.08.
산업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WTO 서비스협상과 국내 서비스산업의 대응」, 2001.12.21.
산업연구원,「산업경제」, 제62호(2001-41), 2001.
,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 비즈니스 서비스 및 서비스 수출 시책을 중심으로", 2001.09.
,「知識서비스 輸出 活性化 對策」, 2002.08.
,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2004.01.

한국은행,「最近의 서비스交易 動向」, 2000.01.
,「最近의 서비스收支 赤字 擴大要因과 示唆點」, 2000.09.
Chesher, Michael and Rukesh Kaura, Electronic Commerce and Business Communications, Springer, 1998.
Ki-ho Yoon, "Diffusion of Information Goods and Stability of Networks," 2001.05.(http://www.sogang.ac.kr/
kiho)
, "The Optimal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2000.04.(http://www.sogang.ac.kr/~kiho)
WTO/GATS, 2004.(http://www.wto.org)